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유경PSG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경PSG액티브밸류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경PSG액티브밸류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 합 투 자 기 구 명 칭 : **유경PSG액티브밸류증권투자신탁[주식]**
2. 집 합 투 자 업 자 명 칭 : 유경PSG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www.rkpsg.com)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5.07.17.
5. 증 권 신 고 서 효 력 발 생 일 : **2025.07.31.**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7. 모 집 (매 출) 기 간 (판 매 기 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유경PSG자산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효력발생일 전에 정정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 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에 관련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 투자증권 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 투자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 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 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 포함)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투자설명서 목차]

▶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제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참고] 펀드 용어정리

요약 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5.07.17.

유경PSG액티브밸류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 70236]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유경PSG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채권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유경PSG액티브밸류증권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40% 이하를 채권 등에 투자하며 주가가 기업가치 대비 매력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는 주식을 대상으로 역발상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자본 이익의 기회를 모색합니다. 이러한 기회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주식투자 비중을 60%에서 100% 사이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채권 부분에서는 국고채, 통안채 위주로 투자하되 신용평가등급 A-이상인 회사채에도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없음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 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이내	1.060%	0.41%	1.370	1.062%	208	320	436	683	1,388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형(C)	없음	1.650%	1.00%	1.580	1.650%	169	344	524	903	1,967
수수료선취 - 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이내	0.860%	0.21%	1.010	0.861%	138	229	324	526	1,109
수수료미징구 - 온라인형(Ce)	없음	1.150%	0.50%	1.190	1.150%	118	240	367	636	1,404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2024/06/13 ~ 2025/06/12	최근 2년 2023/06/13 ~ 2025/06/12	최근 3년 2022/06/13 ~ 2025/06/12	최근 5년 2020/06/13 ~ 2025/06/12	설정일이후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	2007-06-13	14.63	14.34	13.84	8.54	4.74
비교지수(%)	2007-06-13	11.92	10.12	10.73	7.52	3.48
수익률 변동성(%)	2007-06-13	18.51	15.88	15.48	16.06	17.54

(주1) 비교지수 : KOSPI (95%) + Call금리 (5%)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 판매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은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홍범	1978	책임운용역	10	950	16.51%	16.21%	16.51%	16.21%	15년 11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본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본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고객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소규모의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분산투자 등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1)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rkpsg.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 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유경PSG자산운용㈜ (대표번호: 02-2090-33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rkpsg.com)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가능	**모집.매출 총액**	1조 좌
효력발생일	2025.07.31.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rkpsg.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

수수료	선취(A)	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B)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이며 각 펀드별로 가입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액(I)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이며 각 펀드별로 가입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1) 기타에 해당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 가. 매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rkpsg.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rkpsg.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rkpsg.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유경PSG액티브밸류증권투자신탁(주식)	70236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70237
수수료선취-온라인-(A-E)	BF9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7023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9821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982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982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BF9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BF9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BF93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BF93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BU94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BF93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F93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펀드용어의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조좌

(이 투자신탁은 1조좌까지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금액이 예정좌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때까지 판매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으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rkpsg.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 또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유경PSG액티브밸류증권투자신탁(주식)	70236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70237
수수료선취-온라인-(A-E)	BF9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7023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9821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982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982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BF9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BF9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BF93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BF93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BU94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BF93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F93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7.06.13	최초설정
2008.10.15	약관변경("블리스TNV하이밸류주식투자신탁" → "블리스하이밸류주식투자신탁"으로 명칭 변경)
2008.10.21	장기주식형 세제혜택 적용
2009.05.06.	규약 변경 및 펀드명 변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적용) '블리스하이밸류주식투자신탁' → '블리스하이밸류증권투자신탁[주식]'
2009.10.05	선취수수료 자율화
2009.12.04	규약 변경("블리스 하이밸류 증권투자신탁"→"드림 하이밸류 증권투자신탁"으로 명칭 변경)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성인근 →고승재)
2010.04.15	판매보수인하에 따른 규약 변경

2010.11.30	종류형(C-e,C-I,C-F) 추가에 따른 규약 변경
2012.01.25	담당 운용역 변경
2013.03	집합투자기구 명칭변경 드림하이밸류증권투자신탁 → 드림메가트렌드증권투자신탁
2014.02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5.05	집합투자기구 명칭변경 드림하이밸류증권투자신탁 → 유경PSG액티브밸류증권투자신탁(주식)
2016.07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투자위험등급변경(1등급→4등급)
2016.08	설정.환매기준시간 변경 및 종류형 수익증권 신설
2017.08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017.09	종류형 수익증권(Class C-Pe2) 신설
2018.07	1) 환매수수료 삭제 2) 운용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 및 팀제운용 문구 추가 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업데이트 4)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등 업데이트(운용규모, 재무현황)
2019.07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019.09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8.1.) 반영
2020.06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021.02	책임운용인력 변경(강대권 ▸ 이대상)
2021.03	책임운용인력 변경(이대상 ▸ 김홍범)
2021.09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22.08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023.09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024.08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025.07	1)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류 S 등 수익증권 관련 설명) 개정사항 반영 3)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4) 비교지수 변경 (KOSPI 95% + Call 5% -> KOSPI 100%)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고객의 저축기간 또는 저축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부 내용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유경PSG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35-4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14층 (대표전화: 02-2090-33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25.07.17.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홍범	1978	책임운용역	10	950	16.51%	16.21%	16.51%	16.21%	* 운용경력: 15년 11개월 - 유경PSG자산운용 - 그로쓰힐자산운용 - 더블유자산운용 - 안다자산운용 - 스팍스자산운용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본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본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개수 및 규모 : 1개 / 42억

나.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최근 3년간 변경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김홍범	2021.03.31~현재

※2025.07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

		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B)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이며 각 펀드별로 가입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액(I)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이며 각 펀드별로 가입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1) 기타에 해당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 가. 매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는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비교지수(KOSPI지수 100%)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주식	60%이상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

			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상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단,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②	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⑤	장내파생상품	10%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	
⑥	집합투자증권 등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단, 법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⑦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⑧	증권의 대여	50%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⑨	증권의 차입	20%이하	상기의 ①주식, ②채권, ③자산유동화증권, ④어음의 차입

※ 상기의 투자대상 외에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양도성예금증서

※ 상기의 투자대상 중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및 증권차입의 투자비율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해당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15일 이내의 예외기간을 둡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법인발행 지분증권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투자	-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이 투자신탁 (투자신탁의 최초 설립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

	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증권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투자	-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상기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투자 및 파생상품투자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기본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의 투자는 60%이상, 채권등에의 투자는 40%이하로 투자・운용하는 주식형 상품입니다. 주식부문에서는 주가가 기업가치 대비 매력적으로 형성돼 있으며, 여기에 가까운 장래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는 주식을 대상으로 역발상적인 방법으로 자본 이익의 기회를 모색합니다. 이러한 기회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주식투자의 비중을 60%-100% 사이로 탄력적으로 조절합니다. 채권부분에서는 국고채, 통안채 위주로 투자・운용하되 신용평가등급 A-이상인 회사채에도 선별적으로 투자・운용합니다.

(2) 세부 운용전략

- 주가가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 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평가 기법에 의해 저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가치, 수익가치, 성장가치를 분석하여 이를 현가화한 수치를 현 주가가 비교하여 현저히 저평가된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삼습니다.

- 저평가된 기업들 중에서 중기(6개월~18개월)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주가가 저평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평가 매력까지 함께 있는 경우에만 최종 투자대상으로 확정됩니다.

- 중기적인 재평가 매력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무적/영업적 위기로 주가와 실적이 모두 억눌려 있으나 강한 회생잠재력을 갖춰 상황의 반전이 가능한 턴어라운드기업
* 일반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강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고속성장기업
* 보유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산가치가 일반적으로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알짜자산기업
* 특정한 틈새시장을 대상으로 특수한 상품을 생산해 실적 호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노베이션기업
* M&A거래의 인수 후보가 될 수 있는 잠재적 피인수기업
* 가까운 시점에서 구조조정이 임박하거나 경영진 교체가 예상되는 재정비기업
* 비합리적 요인에 의해서 투자업계에서 관심받거나 분석되지 못하고 있는 히든밸류기업

- 중기적인 재평가 매력을 갖고 있음에도 저평가된 가격으로 해당 대상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해당 기업이 대개 일반적으로 '현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집합투자기구는 주도주 이외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별 기업 분석에 기반해 상향식(bottom-up)으로 운용됩니다.

※ 비교지수: KOSPI지수 100%

▸ KOSPI지수: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한국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가지수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며, 산출방법은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날의 종합주가지수를 100으로 정하고, 개별종목의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가중한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대비하여 산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전략

1) 위험관리체계
- 펀드 운용관련 투자 및 리스크 관리 규정 제정 및 운영
- 펀드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합리적 분석
- 리스크 요인별로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향 설정

2) 사후 리스크 관리
- 리스크 관리본부에서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을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운용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 필요한 경우, 운용부서에서는 자체 점검후, 리스크 관리본부에 현황 또는 대응 방안 보고
- 집합투자규약의 운용 제한 사항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국내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고객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거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이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시장의 여러 변동요인에 따라 환매청구시의 기준가격과 환매일의 기준가격이 동일하지 않아 환매청구일의 평가금액은 환매일의 출금액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위험	고객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월간 계속하여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고객 유형

(1)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6등급 중 2등급(높은위험)**에 해당되는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국내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주식과 관련된 보통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2) 등급분류기준

- 유경PSG자산운용(주)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수익률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위험 등급은 최소 6단계(매우 높은 위험(1등급), 높은 위험(2등급), 다소 높은 위험(3등급), 보통 위험(4등급), 낮은 위험(5등급), 매우 낮은 위험(6등급)로 구분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이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 실제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 **35.9623%** 수준이므로 유경PSG자산운용(주)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2등급(높은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추후 매 결산시 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변경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위험등급 변경사유
2016.07	1등급(매우높은위험)	4등급(보통위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5단계→6단계)
2020.06	4등급(보통위험)	2등급(높은위험)	실제 수익률 변동성 반영

*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기준(각 등급 적용기준)

< 유경PSG자산운용의 투자위험 등급 기준>

(1) 투자대상자산을 고려한 투자위험 등급기준

: 신규펀드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 자산 및 비중 향후 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부여합니다.

위험등급	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원금의 80% 미만 보존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대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의 80% 이상 보존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 보존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가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 주식, 원자재,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2) 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에 따른 투자위험 등급기준

: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는 해당 결산일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토대로 위험등급을 점검하고 변경합니다. 단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특수하거나 복잡한 수익구조의 펀드(ELF,레버리지펀드, 인버스펀드, 부동산 펀드 등)는 이를 감안하여 부여한 최초 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등급	1 (매우높은위험)	2 (높은위험)	3 (다소높은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 낮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 상기 위험등급 산정기준은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유경PSG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산정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

집합투자기구 종류	가 입 자 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가입제한은 없으며,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2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집합투자기구, 법 제9조제 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 100억 이상 개인고객, 500억 이상 법인 고객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고객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고객 전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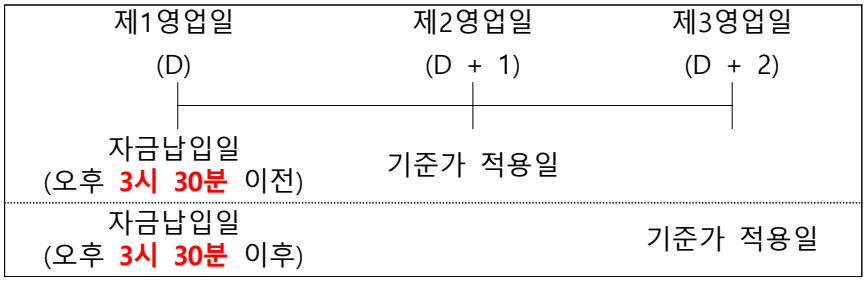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소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봅니다.

※ 운용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추가청약이 어려워질 경우에 모집(판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판매수수료

(가) 선취판매수수료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수익증권 :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의 1% 이내
- 수수료선취-온라인-(A-E) 수익증권 :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의 0.5% 이내

(나) 후취판매수수료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수익증권 :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100분의 0.15 이내

(5)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제1영업일 (D)	제2영업일 (D + 1)	제3영업일 (D + 2)	제4영업일 (D + 3)
환매청구일 (**오후 3시 30분 이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청구일 (**오후 3시 30분 이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봅니다.

※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4) 환매수수료

: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이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규약과 법령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개최 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

a.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b. 당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c.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d.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

a.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b.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c.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써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집합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 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당해 투자신탁은 법 제 231조에 의거하여 판매보수,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 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집합투자업자(www.rkpsg.com)・판매회사・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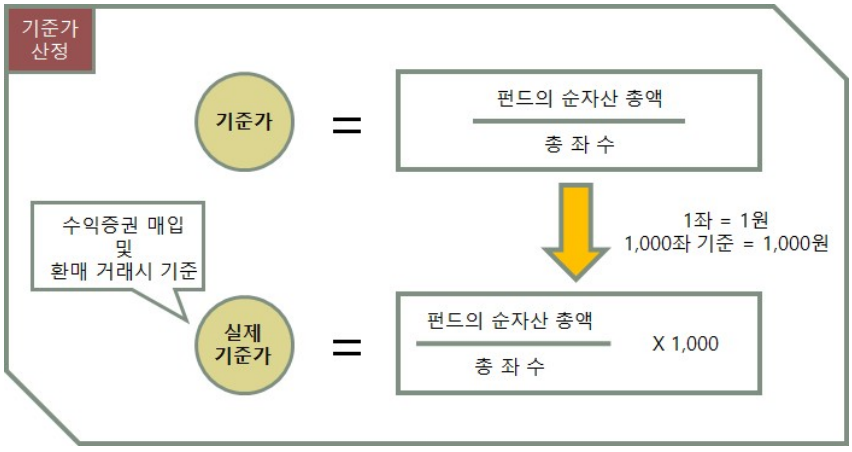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1)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 가 방 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③비상장채무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④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가사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분	주요내용
구성	사장, 운용담당본부장, 마케팅담당본부장, 준법감시인, 운용 및 리스크관리주관부서장
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5.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 등 평가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7. 평가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고객은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이 집합투자기구의 고객에게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종류)	가입자격	지급비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 없음	납입금액의 1.0% 이 내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가입제한이 없음, 온라인가입전용	납입금액의 0.5% 이내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이 없음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가입제한이 없음,온라인가입전용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2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집합투자기구, 법 제9조제 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 100억 이상 개인고객, 500억 이상 법인 고객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투자자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가입자 전용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수익증권	-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100분의 0.15 이내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	-	-	-
부과 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 환매수수료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회적으로 부과하며, 징구된 환매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 다른 종류간 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600	0.410	0.020	0.030	1.060	1.370	0.002	1.062	1.062	0.174
수수료선취-온라인-(A-E)	0.600	0.210	0.020	0.030	0.860	1.010	0.000	0.861	0.861	0.17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600	1.000	0.020	0.030	1.650	1.580	0.000	1.650	1.650	0.17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600	0.500	0.020	0.030	1.150	1.190	0.000	1.150	1.150	0.1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600	0.100	0.020	0.030	0.750	-	0.002	0.752	0.752	0.174

고액(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600	0.050	0.020	0.030	0.700	-	0.003	0.703	0.703	0.1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600	0.000	0.020	0.030	0.650	-	-	0.650	0.65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0.600	0.700	0.020	0.030	1.350	1.580	0.002	1.352	1.352	0.1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0.600	0.650	0.020	0.030	1.300	-	-	1.300	1.30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600	0.350	0.020	0.030	1.000	1.580	0.000	1.000	1.000	0.17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0.600	0.325	0.020	0.030	0.975	-	-	0.975	0.975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600	0.160	0.020	0.030	0.810	-	0.000	0.810	0.810	0.17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600	0.128	0.020	0.030	0.778	-	0.001	0.779	0.779	0.185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	-	사유 발생 시	-	-	사유 발생 시

(주1)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4.06.13 ~ 2025.06.12.]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기타비용	383

(주2)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4.06.13 ~ 2025.06.12]

※증권거래비용 예시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증권 등의 자산매매수수료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39,935

(주3)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금융비용 종류 :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기타비용)**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단,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합니다.

②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아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①'의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구분		투자기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08	320	436	683	1388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08	320	436	683	138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69	344	524	903	1967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69	344	524	903	196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18	240	367	636	1404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8	240	367	636	14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77	157	241	419	935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7	157	241	419	9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72	147	225	392	876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2	147	225	392	876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38	229	324	526	1109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38	229	324	526	11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39	282	431	745	1634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39	282	431	745	16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03	209	320	555	1229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3	209	320	555	1229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83	170	260	451	1005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3	170	260	451	100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80	163	250	434	967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0	163	250	434	967

※ 고객이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 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분배 유보는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결산.분배하는 부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이익금의 분배 유보로 인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대 효과: 투자신탁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 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과세시점 이연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와 같이 과세시점 이연의 효과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통하여 과세시점을 확정한 후 수익증권을 추가 매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방법은 각 판매회사의 수익증권저축약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각 판매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②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펀드 단계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사 등)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③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②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일반법인 15.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사항은 "연금계좌 설정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

구분	주요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 및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은 제외)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12%(또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지방소득세 포함시 13.2%(또는 16.5%) 세액공제 효과)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 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의 70%(분리과세)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2024.01.0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과세	연금 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가능

※ 이연퇴직소득과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고객은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 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2023.01.01. 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59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8기(2024.06.13 - 2025.06.12)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7기(2023.06.13 - 2024.06.12)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6기(2022.06.13 - 2023.06.12)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제표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8기	제 17기	제 16기
	(2025.06.12)	(2024.06.12)	(2023.06.12)
운용자산	25,861,049,573	26,350,768,985	24,275,053,594
증권	25,252,133,595	25,564,099,330	23,939,914,14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608,915,978	786,669,655	335,139,454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42,193,190	552,911,976	110,607,990
자산총계	26,003,242,763	26,903,680,961	24,385,661,58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90,921,260	450,862,799	153,087,373
부채총계	190,921,260	450,862,799	153,087,373
원본	15,674,989,363	17,212,474,250	17,231,742,090
수익조정금	-5,096,767	-6,817,503	1,258,381,203
이익잉여금	10,142,428,907	9,247,161,415	5,742,450,918
자본총계	25,812,321,503	26,452,818,162	24,232,574,211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8기	제 17기	제 16기
	(2024.06.13 - 2025.06.12)	(2023.06.13 - 2024.06.12)	(2022.06.13 - 2023.06.12)
운용수익	2,441,520,411	2,669,758,927	240,870,520
이자수익	17,009,628	14,920,288	14,381,885
배당수익	422,489,880	405,004,108	444,122,149
매매/평가차익(손)	2,002,020,903	2,249,834,531	-217,633,514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75,972,960	0	220,000
관련회사 보수	175,972,96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7,144,556	0	220,000
당기순이익	2,258,402,895	2,669,758,927	240,650,520
매매회전율	93.49	86.76	204.85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통합대차대조표

통 합 재 무 상 태 표

투자신탁명 : 유경PSG액티브밸류 증권투자신탁(주식) [단위:원]

과 목	제18기(2025.06.12)		제17기(2024.06.12)		제16기(2023.06.12)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608,915,978		786,669,655		335,139,454
1. 현금및현금성자산	608,915,978		786,669,655		335,139,454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25,252,133,595		25,564,099,330		23,939,914,140
1. 지분증권	25,252,133,595		25,564,099,330		23,939,914,140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42,193,190		555,007,333		110,607,99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28,970,018		552,110,442		110,264,206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204,628		801,534		343,784	
4. 미수배당금	12,316,125					
5. 기타미수입금	702,419		2,095,357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26,003,242,763		26,905,776,318		24,385,661,584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90,921,260		504,799,699		199,691,213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106,938,025		448,767,442		153,087,373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1,403,519		4,186,582			
4. 수수료미지급금	46,327,716		51,845,675		46,603,840	
5. 기타미지급금	36,252,000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190,921,260		504,799,699		199,691,213
자 본						
1. 원 본	15,674,989,363		18,156,310,373		18,178,997,314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10,137,332,140		8,244,666,246		6,006,973,057	
(발행좌수 당기: 15,674,989,363 좌	이익잉여금	10,142,428,907		8,239,158,048		4,796,681,829
전기: 18,156,310,373 좌	수익조정금	-5,096,767		5,508,198		1,210,291,228
전전기: 18,178,997,314 좌)						
(기준가격 당기: 1,641.59 원						
전기: 1,513.01 원						
전전기: 1,382.08 원)						
자 본 총 계		25,812,321,503		26,400,976,619		24,185,970,37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6,003,242,763		26,905,776,318		24,385,661,584

다. 통합손익계산서

통 합 손 익 계 산 서

투자신탁명 : 유경PSG액티브밸류 증권투자신탁(주식) [단위:원]

과 목	제18기(2024.06.13-2025.06.12) 금 액		제17기(2023.06.13-2024.06.12) 금 액		제16기(2022.06.13-2023.06.12)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439,499,508		419,924,396		458,504,034
1. 이 자 수 익	17,009,628		14,920,288		14,381,885	
2. 배당금수익	422,489,880		405,004,108		444,122,149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4,476,689,955		3,969,731,876		6,416,911,775
1. 지분증권매매차익	2,591,241,687		2,010,585,621		1,738,578,234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1,885,254,493		1,958,812,857		4,676,590,994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193,775		333,398		1,742,547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474,669,052		1,719,897,345		6,634,545,289
1. 지분증권매매차손	2,474,662,859		1,719,894,142		6,627,803,889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6,193		3,203		6,741,400	
운 용 비 용		183,117,516		194,529,285		194,250,018
1. 운용수수료	135,423,996		145,179,039		146,572,198	
2. 판매수수료	36,036,205		36,822,764		34,737,827	
3. 수탁수수료	4,512,759		4,837,744		4,884,199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7,144,556		7,689,738		8,055,794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258,402,895		2,475,229,642		46,620,502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144076837		0.13632889		0.00256452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운용펀드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6.13.-2025.06.12	172	260	5	8	23	34	155	259
2023.06.13.-2024.06.12	172	238	6	8	6	9	172	265
2022.06.13.-2023.06.12	218	299	8	11	54	70	172	242

(주1) 2024.06.13 - 2025.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29,845,499좌/213,152,840원

(주2) 2023.06.13 - 2024.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41,901,121좌/214,698,414원

(주3) 2022.06.13 - 2023.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35,410,733좌/187,149,061원

액티브밸류(주식)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6.13.- 2025.06.12	10	16	0	1	0	1	10	17
2023.06.13.- 2024.06.12	12	16	0	1	2	2	10	16
2022.06.13.- 2023.06.12	12	16	0	1	0	0	12	17

(주1) 2024.06.13 - 2025.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287,382좌/10,454,528원
(주2) 2023.06.13 - 2024.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891,256좌/7,505,334원
(주3) 2022.06.13 - 2023.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626,813좌/10,693,244원

액티브밸류(주식) 수수료선취-온라인(A-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6.13.- 2025.06.12	1	2	0	0	0	0	2	2
2023.06.13.- 2024.06.12	1	1	0	0	0	0	1	2
2022.06.13.- 2023.06.12	1	1	0	0	0	0	1	2

(주1) 2024.06.13 - 2025.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355,967좌/1,896,451원
(주2) 2023.06.13 - 2024.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085,662좌/1,402,520원
(주3) 2022.06.13 - 2023.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181,382좌/1,396,073원

액티브밸류(주식)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6.13.- 2025.06.12	1	2	0	0	1	1	1	1
2023.06.13.- 2024.06.12	1	2	0	0	0	0	1	2
2022.06.13.- 2023.06.12	1	2	0	0	0	0	1	2

(주1) 2024.06.13 - 2025.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9,301좌/47,094원

액티브밸류(주식)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6.13.-2025.06.12	1	2	0	0	0	0	1	2
2023.06.13.-2024.06.12	1	2	0	0	0	0	1	2
2022.06.13.-2023.06.12	1	2	0	0	0	0	1	2

(주1) 2024.06.13 - 2025.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78,142좌/1,071,943원
(주2) 2023.06.13 - 2024.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00,012좌/729,893원
(주3) 2022.06.13 - 2023.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64,874좌/1,020,629원

액티브밸류(주식)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6.13.-2025.06.12	131	199	1	1	0	0	132	220
2023.06.13.-2024.06.12	130	180	1	2	0	0	131	201
2022.06.13.-2023.06.12	129	177	1	2	0	0	130	182

(주1) 2024.06.13 - 2025.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16,738,113좌/191,765,696원
(주2) 2023.06.13 - 2024.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8,721,340좌/149,678,333원
(주3) 2022.06.13 - 2023.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17,808,471좌/163,258,978원

액티브밸류(주식)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6.13.-2025.06.12	23	23	0	0	23	24	0	0
2023.06.13.-2024.06.12	23	21	0	0	0	0	23	24
2022.06.13.-2023.06.12	96	88	0	0	73	62	23	21

(주1) 2023.06.13 - 2024.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6,514,561좌/46,716,899원

액티브밸류(주식)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6.13.-2025.06.12	8	11	1	1	1	2	8	11
2023.06.13.-2024.06.12	8	10	1	1	0	1	8	11
2022.06.13.-2023.06.12	7	9	1	1	0	1	8	10

(주1) 2024.06.13 - 2025.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116,752좌/4,622,609원
(주2) 2023.06.13 - 2024.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722,216좌/3,725,568원
(주3) 2022.06.13 - 2023.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889,009좌/4,866,897원

액티브밸류(주식)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6.13.-2025.06.12	1	1	0	0	0	0	1	1
2023.06.13.-2024.06.12	1	1	0	0	0	0	1	1
2022.06.13.-2023.06.12	1	1	0	0	0	0	1	1

(주1) 2024.06.13 - 2025.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70,824좌/703,545원
(주2) 2023.06.13 - 2024.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26,700좌/725,860원
(주3) 2022.06.13 - 2023.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43,348좌/810,437원

액티브밸류(주식)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6.13.-2025.06.12	2	2	0	0	0	1	1	2
2023.06.13.-2024.06.12	2	2	0	0	0	1	2	2
2022.06.13.-2023.06.12	2	3	0	0	0	1	2	3

(주1) 2024.06.13 - 2025.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002,762좌/1,523,275원
(주2) 2023.06.13 - 2024.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036,501좌/1,452,573원

(주3) 2022.06.13 - 2023.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612,579좌/2,064,197원

액티브밸류(주식)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6.13.- 2025.06.12	2	3	0	0	1	2	1	2
2023.06.13.- 2024.06.12	3	3	0	0	0	1	2	3
2022.06.13.- 2023.06.12	3	4	0	0	1	1	3	3

(주1) 2024.06.13 - 2025.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04,176좌/1,067,699원
(주2) 2023.06.13 - 2024.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979,679좌/2,761,434원
(주3) 2022.06.13 - 2023.06.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383,651좌/3,038,606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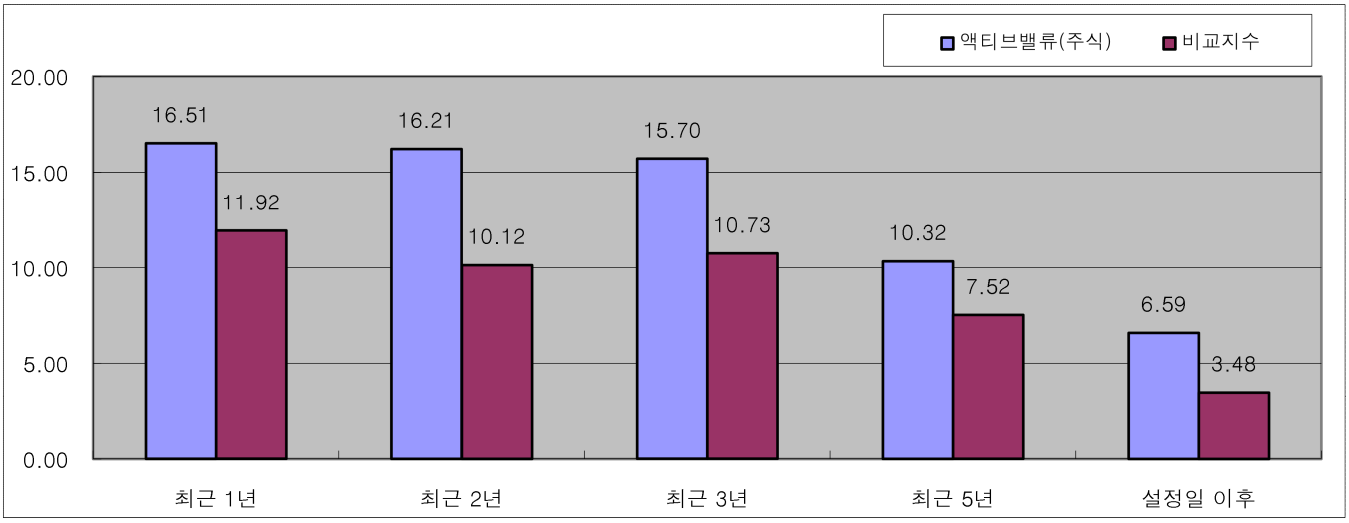

[단위 :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4.07.18 ~ 25.07.17	23.07.18 ~ 25.07.17	22.07.18 ~ 25.07.17	20.07.18 ~ 25.07.17	07.06.13 ~ 25.07.17
액티브밸류(주식)	16.51	16.21	15.70	10.32	6.59
비교지수	11.92	10.12	10.73	7.52	3.48

수익률변동성(%)	18.51	15.88	15.48	16.06	17.54
액티브밸류(주식)Class A	15.30	15.01	14.49	9.17	5.47
비교지수	11.92	10.12	10.73	7.52	3.48
수익률변동성(%)	18.51	15.88	15.48	16.06	17.54
액티브밸류(주식)Class C	14.63	14.34	13.84	8.54	4.74
비교지수	11.92	10.12	10.73	7.52	3.48
수익률변동성(%)	18.51	15.88	15.48	16.06	17.54
액티브밸류(주식)Class C-e	15.20	14.91	14.40	9.08	4.80
비교지수	11.92	10.12	10.73	7.52	3.72
수익률변동성(%)	18.51	15.88	15.48	16.06	13.81
액티브밸류(주식)Class C-Ci	15.65	15.36	14.84	9.51	6.45
비교지수	11.92	10.12	10.73	7.52	4.00
수익률변동성(%)	18.51	15.88	15.48	16.06	13.81
액티브밸류(주식)Class A-E	15.53	15.23	14.72	9.39	6.35
비교지수	11.92	10.12	10.73	7.52	3.73
수익률변동성(%)	18.51	15.88	15.48	16.06	15.87
액티브밸류(주식)Class C-P1	14.97	14.68	14.17	8.86	6.07
비교지수	11.92	10.12	10.73	7.52	5.02
수익률변동성(%)	18.51	15.88	15.48	16.06	15.24
액티브밸류(주식)Class C-Pe	15.37	15.08	14.57	9.24	6.44
비교지수	11.92	10.12	10.73	7.52	5.02
수익률변동성(%)	18.51	15.88	15.48	16.06	15.24
액티브밸류(주식)Class S	15.58	15.29	14.78	9.44	6.75
비교지수	11.92	10.12	10.73	7.52	5.01
수익률변동성(%)	18.51	15.88	15.48	16.06	15.25
액티브밸류(주식)Class S-P	15.62	15.33	14.81	9.48	6.78
비교지수	11.92	10.12	10.73	7.52	5.01
수익률변동성(%)	18.51	15.88	15.48	16.06	15.25

(주1) 비교지수 : (0.95 * [KOSPI]) + (0.05 * [CALL금리])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말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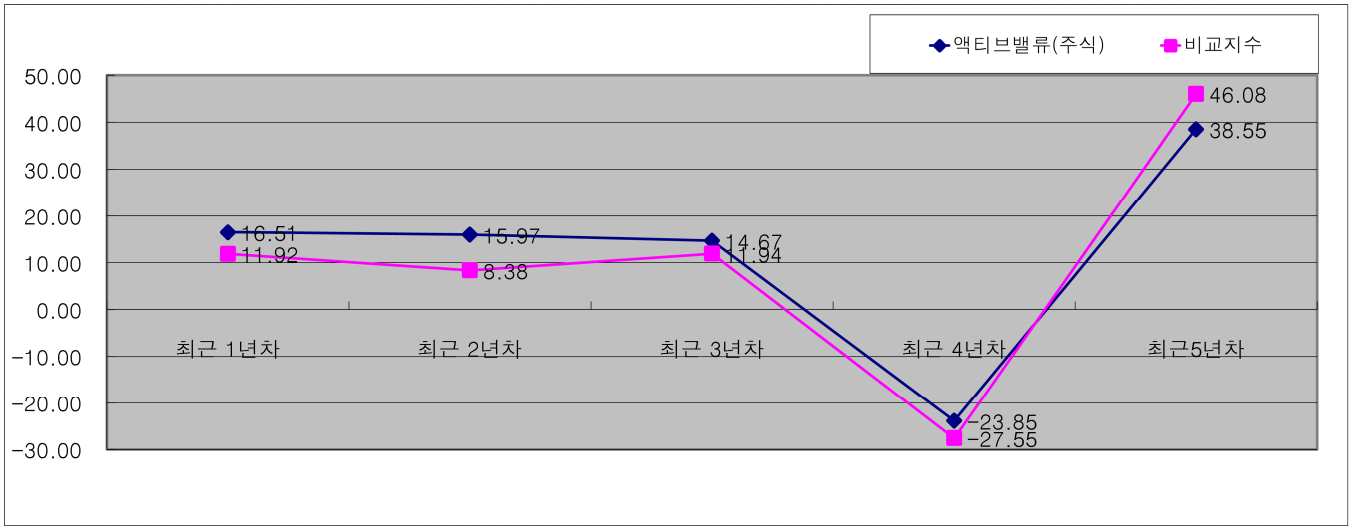

[단위 :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4.07.18 ~ 25.07.17	23.07.18 ~ 24.07.17	22.07.18 ~ 23.07.17	21.07.18 ~ 22.07.17	20.07.18 ~ 21.07.17
액티브밸류(주식)	16.51	15.97	14.67	-23.85	38.55
비교지수	11.92	8.38	11.94	-27.55	46.08
액티브밸류(주식)Class A	15.30	14.76	13.48	-24.67	37.15
비교지수	11.92	8.38	11.94	-27.55	46.08
액티브밸류(주식)Class C	14.63	14.10	12.82	-25.13	36.38
비교지수	11.92	8.38	11.94	-27.55	46.08
액티브밸류(주식)Class C-e	15.20	14.66	13.38	-24.74	37.03
비교지수	11.92	8.38	11.94	-27.55	46.08
액티브밸류(주식)Class C-Ci	15.65	15.11	13.82	-24.43	37.56
비교지수	11.92	8.38	11.94	-27.55	46.08
액티브밸류(주식)Class A-E	15.53	14.99	13.70	-24.52	37.41
비교지수	11.92	8.38	11.94	-27.55	46.08
액티브밸류(주식)Class C-P1	14.97	14.43	13.15	-24.90	36.77
비교지수	11.92	8.38	11.94	-27.55	46.08
액티브밸류(주식)Class C-Pe	15.37	14.83	13.55	-24.63	37.22
비교지수	11.92	8.38	11.94	-27.55	46.08

액티브밸류(주식)Class S	15.58	15.04	13.76	-24.48	37.47
비교지수	11.92	8.38	11.94	-27.55	46.08
액티브밸류(주식)Class S-P	15.62	15.08	13.79	-24.46	37.52
비교지수	11.92	8.38	11.94	-27.55	46.08

(주1) 비교지수 : (0.95 * [KOSPI]) + (0.05 * [CALL금리])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8)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5.06.12 기준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253	0	0	0	0	0	0	0	0	6	1	260
	(97.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34)	(0.54)	(100.00)
합계	253	0	0	0	0	0	0	0	0	6	1	260
	(97.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34)	(0.54)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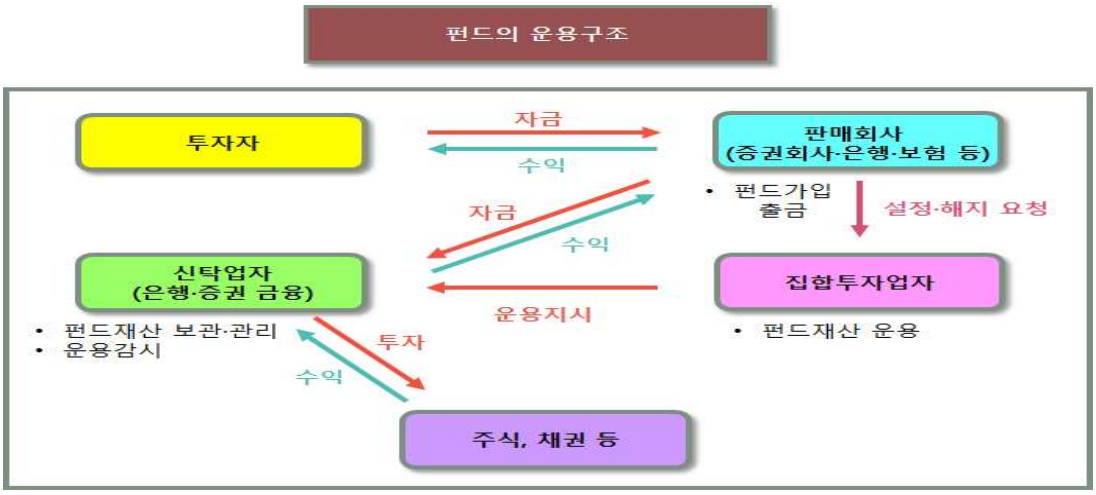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유경PSG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35-4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14층 (연락처: 02-2090-3300, http://www.rkpsg.com)
회사 연혁	1999.05. 다임인베스트먼트 설립 1999.07. 자산운용사 등록(금융감독원) 1999.10.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금융감독원) 2003.12. 타이거자산운용(주)로 사명변경 2004.03. 굿앤리치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2006.11. 회사이전(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9층) 2007.05. 블리스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2009.06 회사이전(여의도동35-4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14층) 2009.10 드림자산운용(주)로 사명변경 2014.04 유경PSG자산운용(주)로 사명변경
자 본 금	110억원
주요주주현황	유경산업 외 특수관계인(98%)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

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26기(24'01~24'12)	25기(23'01~23'12)
현금 및 예치금	6,825	18,17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24,788	26,422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500	500
관계기업투자	15,676	11,142
유형자산	457	627
무형자산	-	-
기타자산	833	677
자산총계	**49,079**	**57,546**
예수부채	-	-
차입부채	-	-
기타부채	1,067	7,671
부채총계	**1,067**	**7,671**
자본금	11,026	11,026
자본잉여금	-	-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이익잉여금(결손금)	36,985	38,848
자본총계	**48,012**	**49,874**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6기(24'01~24'12)	25기(23'01~23'12)
영업수익	8,240	40,288
영업비용	7,105	22,412
영업이익(손실)	1,135	17,876
영업외수익	708	133
영업외비용	61	230
세전이익(손실)	1,782	17,779
법인세비용	337	3,663
당기순손익	1,444	14,115
포괄손익	1,444	14,115

라. 운용자산규모

2025.07.17 기준 /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	파생형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	혼합자산	총 계
	주식형	혼합주식	혼합채권	채권	투자계약	재간접							
수탁고	1,490	512	71	0	0	1	0	173	1,595	0	0	2,104	5,945

*금융투자협회 회사별설정규모 순자산총액+평가액 기준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개요

회사명	KEB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 1588-9999 /www.hanabank.co.kr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2)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5)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6)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7)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8)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신탁업자의 의무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20층 ☎ 02-2168-0400 / www.shinhanitas.com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2) 주요업무

・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KAP)	나이스피앤아이(주)	KIS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88(운니동 98-5) 삼환빌딩 4층 TEL: 02-399-335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여의도동, 대하빌딩 4층) TEL:02-398-39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35-4 한국화재보험협회 4층 TEL:02-3215-1416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2)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 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 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경우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수익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업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 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②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 230 조 제 3 항에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④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⑤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 각호의 사항 등

(4)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가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⑦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rkpsg.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등)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① 선정 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 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 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 됨
장내파생 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다. 투자 중개업자의 선정기준

※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 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가. 신탁업자

나.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추가서류]

1. 간이투자설명서

2. 투자설명서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 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또는 총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판매수수료	판매회사가 판매 또는 환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기간 동안 분할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 입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설정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 등에서는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